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743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공사
피고, 피항소인	1. [redacted]시 [redacted]출장소장
	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3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4.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구합51884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5. 28.
판 결 선 고	2016. 1. 28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가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출장소장이 원고에게 ① 2013. 7. 24. 한 재산세 1,774,683,280원의 부과처분 중 1,648,503,3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② 2013. 7. 8. 한 재산세 1,883,730원의 부과처분 중 1,749,8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1,233,800원의 부과처분 중 1,146,08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621,780원의 부과처분 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577,58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110,840원의 부과처분 중 102,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10. 원고에게 한 재산세 47,285,370원의 부과처분 중 43,923,39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3,248,300원의 부과처분 중 3,017,35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1,085,180원의 부과처분 중 1,008,030원을 초과하는 부분, 재산세 317,350원의 부과처분 중 294,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다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7. 8. 원고에게 한 재산세 753,050원의 부과처분 중 699,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라. 피고 [redacted]시장이 2013. 7. 10. 원고에게 한 재산세 206,520원의 부과처분 중 191,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"1. 처분의 경위"부터 "2.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, 가. 원고의 주장, 나. 관계 법령"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(제3쪽 제2행부터 제5쪽 제8행 및 제15~25쪽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판단

가.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85조의2 제3항(이하 '이 사건 감면조항'이라 한다)은 "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(이하 '출자법인'이라 한다)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."고 규정하면서, 제3호에서 "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75(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)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한편 구 지방공기업법(2014. 3. 24.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'지방공사'(제3장), '지방공단'(제4장), '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'(제4장의2)을 규정하면서, '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'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'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, 다만 실제 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자·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,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.

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.

나아가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,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두47072 판결).

나. 이 사건에서 위 관계 법령 및 갑 제1, 5, 11, 14호증,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[redacted]공사법(1982. 12. 31.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되어 1986. 5. 12. 법률 제383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하되, 위 자본금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, 원고는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. 8. 18.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.12%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,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9.48%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'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'에 해당한다.

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원고가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나아가 위 관계 법령 및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는 그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,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점, [redacted]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'이 법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, 「상법」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'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,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,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'상법에 따른 주식회사'에 해당한다.

다.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'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'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(9.48%)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어야 하고,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「계산표」 중 '정당한 세액'란 기재와 같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판사 강경구

판사 남양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계산표

피고 (처분청)	처분일	과세대상	처분액(원) (A)	경감액(원) (B)*주1)	정당한 세액(원) (C)**주2)
[redacted]시 [redacted]출장소장	2013. 7. 24.	포승읍 원정리 1 외 7건	1,774,683,280	126,179,980	1,648,503,300
	2013. 7. 8.	청북면 어연리 298-1	1,883,730	133,930	1,749,800
		오성면 안화리 324-1	1,233,800	87,720	1,146,080
		[redacted]읍 [redacted]리 562-3	621,780	44,200	577,580
		청북면 현곡리 406-46	110,840	7,880	102,960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	2013. 7. 10.	정자동 215	47,285,370	3,361,980	43,923,390
		[redacted]동 186	3,248,300	230,950	3,017,350
		백현동 521 정압동	1,085,180	77,150	1,008,030
		수내동 48	317,350	22,560	294,790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	2013. 7. 8.	평촌동 897-4	753,050	53,540	699,510
[redacted]시장	2013. 7. 10.	[redacted]동 447	206,520	14,680	191,840

*주1) B=A×0.75×9.48% (10원 미만 버림)

**주2) C=A-B

-끝-